

교통안전교육의 과목·내용·방법 및 시간(제46조제1항 관련)

1. 교통안전교육

교육 대상자	교육 시간	교육과목 및 내용	교육 방법
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	1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환경의 이해와 운전자의 기본예절 ○ 도로교통 법령의 이해 ○ 안전운전 기초이론 ○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○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 ○ 어린이·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○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○ 친환경 경제운전의 이해 ○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자동차안전의 이해 	시청각

(비고)

1.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전에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2. 교육과목·내용 및 방법은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2. 특별교통안전교육

가.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

교육 과정	교육 대상자	교육 시간	교육과목 및 내용	교육방법	
음주 운전 교육	(1)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	최근 5년 동안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	12시간 (3회, 회당 4시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음주운전 위험요인 ○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○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○ 음주운전 성향 진단 및 해설 	강의·시청각·발표·토의·영상·진단 등
		최근 5년 동안 2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	16시간 (4회, 회당 4시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음주운전 위험요인 ○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○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○ 음주운전 성향 진단 및 해설 ○ 음주운전 가상체험 및 참여 	강의·시청각·발표·토의·영상·진단·지필검사·과제작성 등
		최근 5년 동안	48시간	○ 음주운전 위험요인	강의·시청

		년 동안 3번 이 상 음주 운 전 을 한 사람	(12회, 회당 4시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○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○ 음주운전 성향 진단 및 해설 ○ 음주운전 가상체험 및 참여 ○ 행동변화를 위한 상담 	각 · 발표 · 토의 · 영화 상영 · 진단 · 지필검사 · 과제작성 · 실습 · 상담 등
배려 운전 교육	(2) 보복운전이 원인이 되어 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		6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스트레스 관리 ○ 분노 및 공격성 관리 ○ 공감능력 향상 ○ 보복운전과 교통안전 	강의 · 시청각 · 토의 · 검사 · 영화 상영 등
법규 준수 교육 (의무)	(3) (1), (2)를 제외하고 법 제7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		6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○ 안전운전의 기초 ○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○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○ 운전유형 진단 교육 ○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	강의 · 시청각 · 토의 · 검사 · 영화 상영 등

(비교)

1. 교육과목 ·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.
2. 위 표의 (1)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 횟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

가.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횟수 산정 시 포함한다.

나. "최근 5년"은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.

나.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

교육 과정	교육 대상자	교육 시간	교육과목 및 내용	교육방법
법규 준수 교육 (권장)	(1) 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	6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○ 안전운전의 기초 ○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○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○ 운전유형 진단 교육 ○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	강의 · 시청각 · 토의 · 검사 · 영화 상영 등
별점 감경 교육	(2)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	4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질서와 교통사고 ○ 운전자의 마음가짐 ○ 교통법규와 안전 ○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등 	강의 · 시청각 · 영화상영 등
현장 참여	(3)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	8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교통 현장 관찰 ○ 음주 등 위험상황에서 	도로교통현장관찰 · 강

교육	사람이나 (1)의 교육을 받은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		의 운전 가상체험 ○ 교통법규 위반별 사고 사례분석 및 토의 등	의·시청각·토의·영화상영 등
고령운전교육	(4) 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	3시간	○ 신체노화와 안전운전 ○ 약물과 안전운전 ○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 ○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○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	강의·시청각·인지능력 자가진단 등

비고

1. 교육대상자가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·마목에 따른 의원·병원·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「치매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위 표 고령운전교육의 교육과목 및 내용란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에 포함된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.
2. 교육과목·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.

3.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

교육 대상자	교육 시간	교육과목 및 내용	교육방법
법 제7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	2시간 (3시간)	(1) 긴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령에 관한 내용 (2) 주요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사례 (3)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(4)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(5)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	강의·시청각·영화상영 등

(비고)

1. 교육과목·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.
2. 위 표의 교육시간에서 괄호 안의 것은 신규 교통안전교육의 경우에 적용한다.

4.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

교육 대상자	교육 시간	교육과목 및 내용	교육방법
법 제73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	2시간	(1) 신체 노화와 안전운전 (2) 약물과 안전운전 (3)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 (4)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(5)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	강의·시청각 ·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

비고

1. 교육대상자가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·마목에 따른 의원·병원·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「치매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위 표 (3)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에 포함된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.
2.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3. 교육과목·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.